

접수서류 목록	접 수 기 준
	<p>주인등록등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공동대표자인 경우 각각 제출 - 접수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
	<p>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현주소지가 상이할 경우 실제거주지 기준으로 접수 ※ 사업자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, 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장 임차계약서 접수 생략
공통	<p><저신용 자영업자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사업자등록증 원본 <hr/> <p><무등록 자영업자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「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요령(중기청 고시)」에 의한 “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”(별첨) ※ 점포내 사업영위자는 임대계약서 사본, 기타 개인용역제공 사업자(유제품 배달원 등)등은 사업사실 확인절차 없이 관련 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 <p><인적용역제공자*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문판매원, 우유배달원, 학원강사, 행사도우미, 간병인, 보험설계사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하는 최근 2개월 이내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중 하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▪소득자별사업소득원천징수부 ▪사업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※미제출자는 “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” 제출 <p><농림어업인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농림어업 종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농협·수협·산림조합 조합원(실제 종사자에 한함) 확인서

	<p>▪행정기관·공공기관 등의 입증서류(아래의 서류 중 한가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업인 확인서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) - 농업인·어업인·임업인 후계자·독립가 증명서(시.군 발급) - 신지식임업인 인증서(산림청 발급) - 영림단원 확인서(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산림조합장) - 농지원부(시.군.구청) - 영농확인서(영농회장, 이.통장) - 축산가축사육현황신고(취급금융기관 현황조사서 또는 영농회장 확인서) - 어선어업(모두 구비) : 어선원부(시.군), 어업허가증·선박증서·선박검사증서 사본 - 양식어업(증명서 중 하나) : 어업허가증 사본, 어업면허증 사본, 행사계약서, 어촌계장 확인서(어촌계) - 맨손어업 : 신고필증(시.군) - 영어사실확인서(어촌계장)
<p>저소득 자영 업자</p>	<p>◦주민자치센터 또는 사업시행기관 등이 발급하는 아래의 저소득 증빙서류 중 하나</p> <p>▪수급자 증명서(주민자치센터 발급)</p> <p>▪법령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확인서(주민자치센터 및 사업시행기관 발급)</p> <p>→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상 자활사업 참여자(동법 제9조 제5항) - 의료급여 2종(「의료보험법시행령」 제2조, 제3조) -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(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) *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% 이하인 자 포함 -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(동법 시행령 제30조)

저소득 증빙서류

		<p>「영유아보육법」 상 보육료 지원 대상(동법 제34조제1항)</p> <p>「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」 [별표2] 제4호 다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본인부담을 경감 받는 자</p> <p>▪연간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로 아래의 서류 중 하나</p> <p>- 소득금액증명원, 종합소득세 납부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,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소득원천징수부,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(3개월 이상),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(3개월 이상)</p>
<p>창업자</p>	<p>창업교육·컨설팅 이수 확인서류</p>	<p>◦정부, 공공기관 등 창업교육기관*이 발급한 교육이수 확인서류</p> <p>* 소상공인지원센터 ‘성공창업패키지’ 과정, 창업진흥원 ‘기술창업학교’, 소상공인지원센터(지방자치단체별로 소재), 근로복지공단 창업교육</p>
	<p>창업준비 소요 자금 증빙서류</p>	<p>◦임대차계약서, 공사(인테리어 등)계약서, 납품계약서(냉동기·쇼케이스·진열대 등의 설비 및 상품)</p> <p>◦세금계산서, 대금지급 영수증 또는 입금증 원본</p>

【자영업자, 농림어업인 제출서류】

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

1. 신청인(본인작성)

상호명 (*해당자에 한함)		사업자명		주민등록번호	-
주소				전화번호	
				휴대폰번호	
상시근로자수 (*해당자에 한함)	명	업종(취급품목)	()		
사업장소재지 (구체적으로)					

2. 사업사실 확인(확인자 작성)

상기인이 위의 장소에서 실제사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				
성명	주민등록번호	주소	연락처(전화)	서명
직장명(직위) (*해당자에 한함)		직장주소 (*해당자에 한함)		
※ 사업사실 확인자 - 시장상인 : 상인회장 - 노상점포 : 사업장 소재지 통·반장 또는 인근 고정사업주, 부녀회장,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등 * 점포내 사업영위자는 임대계약서 사본, 기타 개인용역제공 사업자(유제품 배달원 등)등은 사업사실 확인절차 없이 관련 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				

※ 보증 신청시 제출서류 : 주민등록등본 1부.